

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0월 일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'94. 12.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을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함.
- 나. 조문중 “농촌근대화촉진법”을 “농어촌정비법”으로 함
(안제1조)
- 다. 조문중 “농지개량사업”을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으로 함.
(안제1조, 제2조, 제5조제1항 및 제3항,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덧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- 마. 입법예고결과사본 : 덧붙임

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농지개량”를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”를 “농어촌정비법 제9조”로 하고,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범위)중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한다.

제3조(사업비의 부과등)을 삭제 한다.

제4조(토지의 가격평정)③항중 “법 제132조”를 “법 제52조”로 한다.

제5조(일시이용지의지정)①항중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하고,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하며, ③항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한다.

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중 “법 제5조”를 “법 제11조”로 하고, “농지개량”을 “농업기반정비”로 한다.

1. 호의 “법 제5조”를 “법 제1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..... <u>농촌근대화촉진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농지개량</u>	제1조(목적)..... <u>농어촌정비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..... <u>농업기반정비</u>
제2조(사업의 범위)..... <u>농지개량</u> 1 - 7(생략)	제2조(사업의 범위)..... <u>농업기반정비</u> 1 - 7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비의 부과등) ①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, 기채원금 및 사무비 기타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(현물포함)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③경비 부과 기준은 토지의 평정가격 및 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 환지교부 기준액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. 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 정수의 예에 의한다.	제3조(사업비의 부과등)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
제4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 - ②(생략) ③ <u>제132조</u>	제4조(토지의 가격평정)①-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제52조</u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일시이용지의 지정)①농지개량 <u>농지개량</u>	제5조(일시이용지의지정)①농업기반정 비..... <u>농업기반정비</u>
②.....	②.....
③ <u>농지개량</u>	③ <u>농업기반정비</u>
④.....	④.....
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<u>농지개량</u>	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<u>농업기반정비</u>
1 - 6(생략)	1 - 6(현행과 같음)